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 - 1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비를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「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- 나. “ 「도로교통법」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”를 “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”로 변경(안 제3조제8항)
- 다.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(안 전반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2.2.23. ~ 3.1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(감사담당관-2228)(원안동의)

3)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차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”를 “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영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1”을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8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견인료

8.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

제3조제9호 중 “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9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

제3조제11호 중 “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0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

14. 그 외 수입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1”을 “각 호”로 하고, “용도외에는”을 “용도 외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

제5조제1항 중 “일시차입할”을 “일시 차입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 회계연도”를 “해당 회계연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----- ----- 운영에 필요한-----</p>
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마포구에 주차장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	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-----</p>
<p>제3조(세입) 세입은 다음 각호의1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.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.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	<p>제3조(세입) ----- 각 호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----- 2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----- 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-----

현행	개정안
4.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	4.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
5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	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견인료
6.~ 7. (생략)	6.~ 7. (현행과 같음)
8.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	8.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
9.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	9.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----- -----
10.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	10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
11.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	11. 법 제30조에 따라 -----
12. (생략)	12. (현행과 같음)
13.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	1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
14. 기타 잡수입	14. 그 외 수입
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1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4조(세출) ----- 각 호 -- 용도 외에는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5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5조(일시차입)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</p>	<p>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일시차입) ① ----- ----- 일시차입할 -----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 해당 회계연도 ----- ---</p> <p>제6조(잉여금의 처리) ----- ----- 다음 연도 -----</p>